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47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9.

발 의 자:이상헌·강민정·김성주

김승원 · 김정호 · 문진석

신동근 • 안민석 • 양정숙

유정주 • 윤관석 • 이광재

이병훈 • 이상직 • 전용기

홍정민 의원(16인)

제안이유

남북은 과거 수차례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체육교류를 해오며 남 북관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준 바 있음.

그러나 만성적인 체육교류 예산의 부족은 남북 간 체육교류 사업 횟수의 축소뿐만 아니라 일회성 전시사업으로 추진하게 하여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남북 간의 체육교류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.

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 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간 체육교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4의2.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기금은	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	
사용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4의2.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
	를 위한 사업
5. ~ 11. (생 략)	5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